

제2장 선거

1. 선거제도

1) 선거와 선거관리 일반

(1) 선거의 개념

선거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특정 지위에 오를 사람을 그 구성원들이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의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주권과 참정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형성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민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제화된 조직원리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다수인이 하는 합성행위라는 점에서 각 개인의 개별적인 투표행위와는 구분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국가와 지방정부 주요기관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기록하는 선거제도들은 2008년 2월 28일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이다.

(2) 선거의 기본원칙

공직선거법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선거는 기본적으로

- ① 납세액 등 경제력,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에 의한 차별금지와 일정한 연령에 달한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의 원칙.
- ② 특정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여 투표의 수적인 가치에 평등을 부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

- ③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의미로 직접선거의 원칙.
- ④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선거에 대응하는 의미로 비밀선거의 원칙.
- ⑤ 기권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선거권 행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의미로 자유선거의 원칙 등 5가지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헌법 41조와 제67조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3) 선거공영제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국가기관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운동관리와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에 무한한 자유를 허용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함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의 균등을 꾀하고, 적은 선거비용에 의한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관리공영제는 선거관리기관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벽보 등 인쇄물을 부착 및 발송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비용공영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일정 부분을 국가 등이 부담하거나 보조 및 보전하여, 경제적 능력 차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선거비용의 보전 또는 보조하는 방식의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선거관련 법률과 제도

(1) 선거관련 법률의 변화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에 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과 같이 각각 개별적

법률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에 만연했던 금권 및 관권에 의한 불공정·불투명했던 선거과정과 선거법 경시 풍토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치권이 10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협상을 통하여 ‘통합 선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와 함께 선거문화의 질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29일 법률8879호까지 34차례 개정을 거치며 총 17장 279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로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공영제의 엄격한 실시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권 노력에 의하여 선거제도와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선거관련 법률과 관련한 주요사항

① 선거권과 연령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과 관련하여 제1공화국 헌법은 법률에 위임하여 21세 이상, 제2-5공화국은 헌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현행 헌법은 직접 규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위임하여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연령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국민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공직선거에서의 기탁금

기탁금제도는 선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입후보의 난립과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다수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선거의 신뢰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소정의 기탁금을 내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5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 원, 시·도의 자치단체장 선거는 5,000만 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 원,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선거는 1,000만 원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사망,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낸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반환받는다.

그러나 법정기준 미만의 득표, 후보자 사퇴와 등록무효, 비례대표의 경우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된다.

④ 주요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대통령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기타 재선거와 보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⑤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23일 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는 14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가 함께하는 거리 유세와 같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및 토론회가 있다. 인쇄물은 53cm×38cm 크기의 선전벽보에 후보자의 사진과 주요경력 및 선거구호 등을 게재하면 되고, 소형 인쇄물은 책자형 1종만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현수막도 사용할 수 있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식 중 광고방송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가능하며, 신문광고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서 가능하다.

⑥ 투표와 개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8시까지) 각 지역선거

관리위원에서 지정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군인이나 장기출장자 등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뒤,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절차는 투표소에 들어서면서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 중 일련 번호지는 투표용지 교부자가 분리하여 번호지함에 투입하고 투표용지만 준다. 기표소에 들어가 이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개표는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이 투표구별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무효표와 유효표를 분리한 후 각각 집계한다. 정확한 개표를 위하여 세심한 심사와 여러 단계의 검산절차를 거친다.

⑦ 당선인 선정

대통령선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이 된다. 최고득표자(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비례대표의원은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정당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수만큼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자총수의 1/3 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위와 같은 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인으로 인정한다.

⑧ 선거와 관련한 소송

선거의 효력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한 선거소송을, 개표부정이나 착오 등으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당·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의한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청을 하고, 소청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소송을,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당·후보자가 선거소송과 같은 기간 내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소청을 하지 않았다면 60일의 소청기간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관한 선거 및 당선소송은 대법원에, 자치구·시·군의 의원이나 자치구·시·군의 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 및 당선소송은 관할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3)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① 선거구획정위원회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 폐단이 심각할 것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 심사위원회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위원회에 제재 조치할 것을 통보할 수 있고,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즉시 명해야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사들의 선거보도 공정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만 해당함) 또는 후보자가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방송기사 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결정(각하, 기각, 인용)하여 청구인과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해야 한다.

⑤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이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와 법이 정한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그 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⑥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선거부정 감시를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시·도위원회는 10인 이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⑧ 여론조사 결과 발표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여론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투표용지와 같은 모형으로 하거나 정당, 후보자 이름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⑨ 공무원의 선거의 중립의무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와 기관 및 단체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선거기간 중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선거운동과 제한

①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제한원칙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개별적 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선거운동의 시간상 제한과 인적제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상 제한이 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사무소에 현수막·간판설치, 자기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인적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87조는 기관·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선거운동의 방법상 제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지만 투표마감시간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비례대표 의원선거를 제외하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정당)는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등록된 예비후보자, 정당 선거사무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들은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명함 형태의 소형인쇄물은 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 1인과 배우자만 줄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민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집회·보고서·인터넷·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으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이외 방법으로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118조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통상적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친족의 관혼상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 등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 지원행위, 직무상 행위에 따른 금품제공은 허용된다.

④ 선거운동 비용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21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인구수×950원, 국회의원 선거는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수×90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4,000만 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4,000만 원+(인구수×50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선거는 4억 원(인구가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 원)+(인구수×300원), 도지사 선거는 8억 원(인구가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 원)+(인구수×250원), 지역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3,500만 원+(인구수×100원),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3,500만 원+(인구수×50원), 자치구·시·군수 선거는 9,000만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 원)으로 각각 제한되어 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은 1회 20만 원 이상 지출시 수표 등을 사용해야 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이외의 단체는 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고, 방송시설 및 일반 일간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3종류가 있고, 임기 3년의 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한다.

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은 제외한다.

3) 역대 선거 및 국민투표 실시 현황

(1) 역대 직접선거 실시 현황표

① 대통령선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52.8.5	56.5.15	60.3.15	63.10.15	67.5.3	71.4.27	87.12.16	92.12.18	97.12.18	02.12.19	07.12.19

② 국회의원선거(5대는 민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

제헌의원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48.5.10	50.5.30	54.5.20	58.5.2	60.7.29	63.11.26	67.6.8	71.5.25	73.2.27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78.12.12	81.3.25	85.2.12	88.4.26	92.3.24	96.4.11	00.4.13	04.4.15	08.4.9

③ 지방자치선거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시군의원	읍면장	읍면의원
		1952.5.10			1952.4.25
		1956.8.13		1956.8.8	1956.8.8
1960.12.29		1960.12.12		1960.12.26	1960.12.19
		1991.6.20	1991.3.26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995. 6. 27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998. 6. 4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02. 6. 13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06. 5. 31					

- ☞ 1. 3, 4, 5대 부통령 직접선거는 2,3,4대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실시됨
 2.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지사, 광역시 및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0년)에는 교육감 직접선거도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④ 교육감선거

2008년 6월 25일 교육감 직접선거

(2) 대통령 간접선거 실시 현황

구분	선 거 일	선 출 기 구	당선자
초대	1948년 07월 20일	국회	이 승 만
8대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박 정 희
9대	1978년 07월 0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박 정 희
10대	1979년 12월 0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최 규 하
11대	1980년 0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전 두 환
12대	1981년 0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	전 두 환

(3) 역대 국민투표 실시 현황

실시 일자	내 용
1962. 12. 17.	투표인수 85.3%가 투표하여 78.8%가 찬성한 헌법개정으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제3공화국 출범)
1969. 10. 17.	투표인수 77.1%가 투표하여 65.1%가 찬성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3기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선 개헌)
1972. 11. 21.	투표인수 91.9%가 투표하여 91.5%가 찬성한 헌법개정으로 유신헌법을 탄생시킨 국민투표였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고, 중임 및 연임제한규정이 폐지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대폭 후퇴되었다. (유신헌법, 제4공화국 출범)
1975. 02. 12.	투표인수 79.8%가 투표하여 78%가 찬성한 헌법개정과 정부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였다. 장기집권과 인권탄압의 근거로 비난 대상이었던 유신헌법 존속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였다.
1980. 10. 22.	투표인수 95.9%가 투표하여 91.6%가 찬성한 헌법개정을 위한 투표였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1980.5.17 전국계엄확대에 이어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7년의 단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출범)
1987. 10. 27.	투표인수 78.2%가 투표하여 93.1%가 찬성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투표였다. 1987. 6. 10. 표출된 민의를 여당이 수용하고, 여·야간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실시를 위한 개헌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실시)

(4)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대통령 선출기관이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두 번 있었다. 제1대 대의원 선거는 1972년 12월 15일 실시하여 2,359명의 대의원을, 제2대 대의원 선거는 1978년 5월 18일 실시하여 2,58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1대 국민회의는 제8대 박정희 대통령을, 제2대 국민회의는 제9대 박정희, 제10대 최규하,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1980년 10월 22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되었다.

(5)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1980년 10월 22일 헌법개정에 의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이 헌법에 의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대통령선거인단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는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되어 전국에서 5,277명의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되었고,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가 4,75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2. 각종 선거와 보령지역의 결과

1982년부터 1995년까지는 보령군과 대천시가 분리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이었지만,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은 항상 단일 선거구였으므로 일관된 연속성이 있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보령군지와 대천시지에 기록된 1994년 이전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수준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 사항은 각종 선거 유형별로 구분하되 총체적 시각에서 기록한다.

1) 대통령 선거와 보령시

(1) 우리나라 헌정사 출발과 초대대통령 선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회의의원이 선출되고, 같은 해 5월 31일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헌국회가 열렸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각각 당선되었다.

1948년 7월 12일 헌법기초위원회와 전문위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된 헌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하였다.

이어 1948년 7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적의원 198명 중 197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190표를 득표하여 압도적 다수로 선출되었다. 차점자는 김구였다. 부통령선거에서는 197명 중 133표를 얻은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와 보령시 현황

① 제2대 대통령 선거(1952년 8월 5일 시행)

보령군은 선거인수 51,811명 중 46,388명이 투표하였다. 후보자 조봉암 2,854표, 이승만 36,463표, 이시영 4,215표, 신흥우 1,318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전국투표인수 7,275,883표 중 5,238,769표를 득표한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② 제3대 대통령 선거(1956년 5월 15일 시행)

보령군은 선거인수 51,084명 중 48,517명이 투표하였다. 후보자 조봉암 5,118표, 이승만 30,219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전국투표인수 9,067,063표 중 5,046,437표를 득표한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③ 제4대 대통령 선거(1960년 3월 15일 시행)

보령군은 선거인수 56,768명 중 53,702명이 투표하여, 후보자 이승만이 49,488표를 득표하였다. 전국투표인수 10,862,272표 중 9,633,376표를 득표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민중의 봉기에 의하여 취임하지 못하였다. 1960년 8월 12일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윤보선 대통령도 사임하게 되었다.

④ 제5대 대통령 선거(1963년 10월 15일 시행)

보령군은 선거인수 63,503명 중 53,753명이 투표하였다. 후보자 장이석 1,434표, 박정희 17,494표, 오재영 2,725표, 윤보선 24,065표, 변영태 1,441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전국투표인수 11,036,175표 중 4,702,640표를 득표한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⑤ 제6대 대통령 선거(1967년 5월 3일 시행)

보령군은 선거인수 66,427명 중 57,724명이 투표하였다. 후보자 이세진 724표, 전진한 1,623표, 윤보선 23,997표, 김준연 1,552표, 박정희 24,844표, 오재영 1,178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전국투표인수 11,645,215표 중 5,688,666표를 득표한 박정희가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⑥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 4월 27일 시행)

보령군은 선거인수 72,240명 중 55,425명이 투표하였다. 후보자 박정희 29,797표, 김대중 21,692표, 박기출 328표, 이종윤 136표, 진복기 782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전국투표인수 12,427,824표 중 6,342,828표를 득표한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⑦ 제8대 대통령 간접선출(1972년 12월 23일 시행)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유신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었다. 1972년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일 후보로 등록한 박정희가 재적 대의원 2,35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⑧ 제9대 대통령 간접선출(1978년 7월 6일 시행)

1978년 6월 30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78년 5월 18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2,581명이 선출되었다. 1978년 7월 6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일후보로 등록한 박정희 후보가 찬성 2,577표를 얻어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⑨ 제10대 대통령(보궐선거) 간접선출(1979년 12월 6일 시행)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후보가 단독 후보로 등록하여 재적대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출석, 찬성 2,465표를 얻어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⑩ 제11대 대통령(보궐선거) 간접선출(1980년 8월 27일 시행)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개최하여, 재적대의원 2,535명 중 2,525명이 출석한 가운데 단일후보로 등록한 전두환이 2,524표를 득표하여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으로, 임기 7년의 단임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바꾸었다. 1981년 2월 11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5,278명이 선출되었고,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4,755표를 득표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7년 10월 27일 간접선거제였던 대통령선거를 직접선거제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보령군에서는 선거인수 53,697명 중 49,126명이 투표하여, 후보자 민주정의당 노태우 10,416표, 통일민주당 김영삼 4,508표, 평화민주당 김대중 3,894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28,075표, 통일한국당 신정일 143표를 득표하였다. 대천시에서는

선거인수 29,157명 중 26,727명이 투표하여 위 후보자 노태우 5,397표, 김영삼 2,749표, 김대중 2,746표, 김종필 15,192표, 신정일 53를 각각 득표하였다.

전국투표인수 23,066,419표 중 8,282,738표를 득표한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⑪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년 12월 18일 시행)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만료로 총 8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보령군에서는 선거인수 50,204명 중 39,196명이 투표하여, 후보자 민자당 김영삼 14,038표, 민주당 김대중 9,641표, 국민당 정주영 10,925표, 신정당 박찬중 2,100표, 정의당 이병호 271표, 무소속 김옥선 772표, 무소속 백기완 482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대전시에서는 선거인 수 33,857명 중 26,654명이 투표하여, 위 후보자 김영삼 9,680표, 김대중 6,028표, 정주영 8,191표, 박찬중 1,673표, 이병호 68표, 김옥선 294표, 백기완 261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전국 투표인수 24,095,170표 중 9,977,332표를 득표한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⑫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12월 18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에게 1,936,048표 차이로 패배했던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를 발판으로 정계에 재진입하였고,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여 제1야당 총재로 복귀하더니 7대, 13대, 14대에 이어 네 번째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연합한 김대중 후보가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이인제 후보가 뛰어들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때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의 출마하여 노동세력의 결집과 세력화를 도모하였다.

종래 주된 선거운동 방식이었던 옥외연설회가 청중동원 등으로 부정선거의 여지와 시비가 많았었기 때문에 옥내연설회로 변경되고, 그 횟수도 대폭 축소하였다. 방송연설과 방송광고 등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1997년 12월 18일 실시되었고,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같이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총선거인수 32,290,416명 중 80.7%인 26,042,63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326,275표 (40.3%)를 득표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9,935,718표를 득표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390,557표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승리하여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 후보자별 득표 현황표

후 보 구 분		득 표 구 분		
정 당	후 보	전 국	총 남	보 령 시
한 나 라 당	이 회 창	9,935,718	235,457	12,432
새 정 치 국 민 회 의	김 대 중	10,326,275	483,093	33,907
국 민 신 당	이 인 제	4,925,591	261,802	15,208
국 민 승 리 2 1	권 영 길	306,026	9,604	499
공 화 당	허 경 영	39,055	3,011	209
바 른 정 치 연	김 한 식	48,717	4,109	309
한 국 당	신 정 일	61,056	4,122	319
* 당선자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⑬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년 12월 19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390,55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다시 출마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제도가 도입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가 유력자로 예상되었으나 후보자 등록 2일 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 이로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2과전으로 압축되었다.

선거운동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신문 및 광고방송, 공영방송 주관 TV대담과 토론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선거운동의 중심무대가 길거리에서 안방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총선거인수 34,991,529명 중 24,784,963명(70.8%)이 투표에 참여하여,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12,014,277표(48.9%)를 획득하여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1,443,297표를 득표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5대에 이어 570,980표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하게 되었다.

나. 후보자별 득표 현황표

후보 구분		득 표 구 분		
정 당	후 보	전 국	총 남	보 령 시
한 나 라 당	이 회 창	11,443,297	357,110	22,473
민 주 당	노 무 현	12,014,277	474,531	27,951
하 나 로 연 합	이 한 동	74,027	4,973	383
민 주 노 동 당	권 영 길	957,148	49,579	2,799
사 회 당	김 영 규	22,063	1,303	102
호 국 당	김 길 수	51,104	4,322	296
* 당선자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⑭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19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17대 대통령 선거는 제15대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차이로 연속 낙선했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각각 3번째, 제15대에 출마했던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공화당 허경영 후보가 각각 2번째 도전하여, 총 10명의 후보가 당내 경선 및 본선에 이르는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갖춰진 공직선거법 아래에서 시행되었지만, 경선과 본선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이 1년 내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특히 유력후보로 평가받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곡동 땅 의혹’과 ‘BBK 설립자’와 관련한 의혹이 최대 이슈였고, BBK와 관련한 문제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탈당과 분당 및 합당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 8월 열린우리당 해체와 동시에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하였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을 거쳐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세 후보가 경선에서 격돌하였고 정동영을 대통령후보로 확정하였다.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네 후보의 당내 경선을 통하여 이명박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였다. 특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 계속된 1년이 넘는 치열한 싸움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였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강조하며 사람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극화 해소를 호소한 최고경영자 출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듯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선 막판에 대선에 뛰어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3번째 도전에서 또다시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17대 대선과정에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돋보였다. 주요 후보들의 유세상황을 위성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유세차량에서 동시에 보여 주었고, 범여권 경선과정

에서는 모바일(휴대전화)투표가 첫선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17대 대선은 국민 지지의 주 요인이었던 도덕성과 개혁성이 탈색되고,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범여권과 경제 회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특히 최고경영자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거인수 37,653,518명 중 63.0%인 23,732,85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1,492,389(48.4%)를 획득하여, 6,174,681 표를 득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 후보자별 득표 현황표

후보 구분		득 표 구 분		
정 당	후 보	전 국	총 남	보 령 시
대 통합 민주 신 당	정 동 영	6,174,681	192,999	10,172
한 나 라 당	이 명 박	11,492,389	313,693	16,630
민 주 노 동 당	권 영 길	712,121	32,132	1,686
민 주 당	이 인 제	160,780	22,592	1,217
창 조 한 국 당	문 국 현	1,375,498	43,383	1,972
참 주 연	정 근 모	15,380	934	85
공 화 당	허 경 영	96,756	3,814	190
참 연 합	전 관	7,161	568	40
한 국 사 회 당	금 민	18,223	1,131	79
무 소 속	이 회 창	3,559,963	304,259	19,876

* 당선자 : 한나라당 이명박

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보령시

(1)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1972년 12월 15일 시행)

읍·면별	후 보 자 별 득 표 상 황				당선자(11명)
대천읍	김원순 1,570	신홍식 3,329	이장우 4,852	황영주 1,730	이장우 · 신홍식
주포면	김청용 2,616	최기방 2,024			김 청 용
오천면	고경식			무투표 당선	고 경 식
천북면	황종영 1,550	이호영 1,295	노계풍 682		황 종 영
청소면	고 식 1,612	김재태 1,709			김 재 태
청라면	이재훈 2,088	김성현 2,121			김 성 현
남포면	이택우 3,016	이준용 1,771			이 택 우
웅천면	김현박 1,560	김현재 2,809	오형규 1,529		김 현 박
주산면	임일재 1,865	이인규 2,062			이 인 규
미산면	이대회			무투표 당선	이 대 회

(2)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1978년 5월 18일 시행)

읍·면별	후 보 자 별 득 표 상 황				당선자(12명)
대천읍	김성복	이장우	신희식	무투표 당선	김성복·이장우·신희식
주포면	김청용 2,281	박량원 2,999			박량원
오천면	고경식 1,823	조동진 2,194	강희태 1,216		조동진
천북면	황종영 1,536	이순구 955	김의남 1,138	노두호 713	황종영
청소면	강원준 1,913	김재태 1,654	박경상 484		강원준
청라면	김성현			무투표 당선	김성현
남포면	이건태 777	이희찬 2,256	이택우 1,775		이희찬
웅천면	김현재 3,975	윤태원 2,804			김현재
주산면	양경모 2,347	이상욱 1,941			양경모
미산면	김해근 1,053	김선갑 1,927	최병무 581	윤중섭 2,573	윤중섭

3)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와 보령시(1981년 2월 11일 시행)

읍·면별	후 보 자 별 득 표 상 황							당선자(23명)
대천읍	최병찬 1,208	강선돈 1,677	박종무 2,972	조성대 1,800	이시우 3,858	김성복 3,398	전명수 2,245	박종무, 조성대, 이시우, 김성복, 전명수
주포면	최기방 1,540	천관호 1,368	이기원 1,090	박성규 1,270				최기방, 천관호
오천면	김종현 1,579	이영구 919	양석우 1,414	임규환 1,406				김종현, 양석우
천북면	유현중 1,035	노재풍 1,075	송이안 1,377					유현중, 송이안
청소면	강원준 1,450	김우진 1,301	고 식 918					강원준, 김우진
청라면	차길호 946	신공수 1,759	조덕준 336	이기응 1,352	김승진 1,329			신공수, 이기응
남포면	이택우	이희찬				무투표 당선		이택우, 이희찬
웅천면	백일기 1,802	정현영 2,249	조옥래 646	김경집 2,128				정현영, 김경집
주산면	임일재 1,482	이상욱 1,096	백영돈 1,380					임일재, 백영돈
미산면	윤중원 1,642	윤중섭 2,616	김기환 2,536					윤중섭, 김기환

4) 국회의원 선거와 보령시

(1) 국회의원 선거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1948년 5월 10일 처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기존의 보령군지와 대천시지에 기록된

제헌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보령지역 후보자와 선거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비중을 두어 기록한다.

(2)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보령시 현황

① 제헌국회의원 선거(1948년 5월 10일 시행)

임기 2년의 제헌국회의원 선거는 미군정이 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1948년 5월 10일 시행되었다. 보령군에서는 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투표수 40,307표 중 12,226표를 득표한 대동청년단 임석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②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년 5월 30일 시행)

제헌국회와 달리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보령군은 1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수 43,677표 중 6,932표를 득표한 김영선 후보가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③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54년 5월 20일 시행)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입후보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었으며, 정당정치에 토대가 형성되었다. 보령군은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수 42,959명 중 21,963표를 득표한 무소속 김영선 후보가 재선되었다.

④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년 5월 2일 시행)

보령군은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수 46,882명 중 27,767표를 득표한 자유당의 이원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⑤ 제5대 국회의원 선거(1960년 7월 29일 시행)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여파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허정 과도정부 아래에서,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어 1960년 7월 29일 양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보령군 민의원 의원선거에는 김영선과 김영기가 출마하여 김영선이 32,930표, 김영기가 15,904표를 득표하여, 김영선이 당선되었다.

같은 날 실시된 충청남도 선거구 참의원 의원 선거는 의원 정수 6명에 24명이 출마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심종석, 이훈구, 정경모, 이범승, 이범석, 한광석 등 6명이 당선되었다.

⑥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년 11월 26일 시행)

혁명정부에 의하여 1962년 12월 17일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개정하였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63년 10월 15일에 제5대 대통령선거를, 1963년 11월 26일에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전국구와 지역구를 구분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채택하였다.

이때 보령군과 서천군은 충청남도 제6지역선거구로 통합되었다. 12명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인수 136,434명 중 106,251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43,793표를 득표한 민주공화당 김종갑 후보가 당선되었다. 2위 김옥선 후보는 25,750표, 3위는 이영우 후보는 12,377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⑦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년 6월 8일 시행)

선거구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보령군과 서천군이 통합되었다. 개표결과 투표인수 120,345명 중 민주공화당 이원장 후보가 51,725표, 신민당 김옥선 후보가 51,189표를 득표하여 이원장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김옥선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967년 12월 12일과 13일에 실시된 법원 재검표에서 김옥선이 51,440표, 이원장이 51,419표를 각각 득표하여, 김옥선 후보가 21표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1968년 6월 3일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김옥선 후보의 당선이 최종 결정되었다.

⑧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년 5월 25일 시행)

제7대 국회의 2차례 선거법 개정에 따라 보령군이 단일 지역구인 충남 제8지역구가 되었다. 선거인수 73,171명 중 53,542명이 투표하여 민주공화당 최종성 후보가 29,754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신민당 신준희 후보는 20,780표를 득표하여 2위를 하였다.

⑨ 제9대 국회의원 선거(1973년 2월 27일 시행)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국회의원 정수의 1/3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령군, 서천군, 부여군이 충남 제6지역선거구가 되었다. 제6지역구 선거인수 221,860명 중 176,068명이 투표하였다. 민주공화당 김종익 67,248표,

신민당 김옥선 70,644표, 통일당 신준희 27,159표, 무소속 한광연 6,766표를 각각 득표하여, 김종익과 김옥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령군은 선거인수 73,912명 중 52,114명이 투표하여 김종익 14,559표, 김옥선 15,140표, 신준희 19,542표, 한광연 1,887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⑩ 제10대 국회의원 선거(1978년 12월 12일 시행)

제9대와 같은 형태로 제6지역구 선거인수 236,558명 중 207,892명이 투표하였다. 민주공화당 김종필 134,513표, 신민당 조중연 30,333표, 민주통일당 윤세민 7,489표, 무소속 김형욱 7,936표, 무소속 김홍조 2,529표, 무소속 나필열 3,085표, 무소속 백남치 9,536표, 무소속 한상필 6,450표를 각각 득표하여 김종필과 조중연이 당선되었다. 무소속 신준희 후보는 중도 사퇴하였다.

보령군은 선거인수 79,866명 중 64,856명이 투표하여 김종필 40,339표, 조중연 7,900표, 윤세민 5,807표, 김형욱 1,758표, 김홍조 572표, 나필열 695표, 백남치 2,660표, 한상필 2,434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⑪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년 3월 25일 시행)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선거구를 92개 지역구로 나누고, 정당별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보령군은 9대, 10대와 같이 충남 제6지역선거구에 속하였으며 선거인수 242,379명 중 187,429명이 투표하였다. 민한당 조중연 46,844표, 국민당 임연상 34,524표, 민권당 김홍조 13,611표, 민사당 김덕현 5,790표, 민정당 이상익 54,328표, 무소속 윤상배 30,112표를 각각 득표하여 이상익과 조중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령군은 선거인수 83,068명 중 61,351명이 투표하여 조중연 13,132표, 임연상 4,638표, 김홍조 2,239표, 김덕현 1,055표, 이상익 15,565표, 윤상배 24,946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⑫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2월 12일 시행)

제11대 선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고, 보령군은 종전과 같이 충남 제6지역선거구에 속하였으며 선거인수 239,152명 중 207,396명이 투표하였다. 민주한국당 조중연 29,394표, 한국국민당 임연상 24,274표, 근로농민당 이상익 4,101표, 민주정의당 이상익 62,907표, 신한민주당 김옥선 51,062표, 무소속 채의승 31,916표를 각각 득표하여 이상익과 김옥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보령군은 선거인수 85,342명 중 70,572명이 투표하였다. 조중연 6,963표, 임연상 2,293표, 이상일 1,260표, 이상익 18,458표, 김옥선 14,752표, 채의승 25,486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⑬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 26일 시행)

1987년 6월 민주화 물결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선거구마다 1인을 선출하고, 전국구는 지역구 의원수의 1/3로 하였다. 보령군은 종전 충남 제6선거구에서 분리되어 대천시와 통합된 1개의 선거구가 되었다.

대천시는 선거인수 30,738명 중 24,172명이 투표하여 민주정의당 이대희 5,447표, 한국민주당 김경두 1,351표, 평화민주당 이시우 2,098표, 신민주공화당 김용환 15,045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보령군은 선거인수 56,332명 중 44,654명이 투표하여 이대희 14,700표, 김경두 2,944표, 이시우 2,385표, 김용환 24,027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합산 결과 총39,072표를 득표한 김용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년 3월 24일 시행)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 방식에 의하여 보령군과 대천시를 합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였다.

대천시는 선거인수 33,515명 중 25,007명이 투표하여 민자당 김용환 17,588표, 민주당 백성남 1,889표, 국민당 박창규 4,719표, 신정당 이문규 517표를 각각 득표하였고, 보령군은 선거인수 50,493명 중 39,562명이 투표하여 김용환 26,658표, 백성남 3,098표, 박창규 13,073표, 이문규 1,316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합산한 결과 총44,246표를 득표한 김용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⑮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4월 11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의원 정수 299명 중 253명은 직접선거로,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전국구의원 46명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여당인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개 정당이었으며, 무소속 출마자를 포함 1,389명이 출마하여 평균경쟁률이 5.5대 1이었다.

총선거인수 31,488,294명 중 20,122,399명(63.9%)이 참가하여 국회의원 선거 실시 후

처음으로 투표율이 70% 이하로 하락되었다. 선거결과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을 각각 획득한 반면, 3김청산을 구호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문민정부 정치개혁의 주요과제였던 통합선거법에 의해 실시한 의미 있는 선거로,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위한 많은 노력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종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별 지역분할 구도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보령시 후보자별 득표현황표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비 고
신 한국 당	최 일 영	10,696	
자 유 민 주 연 합	김 용 환	36,945	당선
무 소 속	안 갑 원	4,931	

⑩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년 4월 13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의원 정수 273명 중 지역구의원 227명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에 의하고, 전국구의원 46명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거 참여 정당은 여당인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민국당, 한국신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등 7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총선거인수 33,482,387명 중 19,157,124명(57.2%)이 참가하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투표율이 60% 이하로 하락되었다.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와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은 17석을 얻는 데 그쳐 군소정당이 되고 말았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1세기를 맞이하며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는 의미와 함께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천 배제와 낙선운동 및 선거법 불복종 운동 등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신자유주의라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노동세력의 결집을 위하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내었던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였고,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정당들도 선거라는 경쟁의 틀 속에 진입하는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

나. 보령시·서천군 후보자별 득표현황표

정 당	후 보 자	보령 득표수	서천 득표수	득표수 합계	비 고
한나라당	안 홍 열	2,535	4,442	6,977	
민 주 당	김 명 수	8,536	3,213	11,749	
자 민 련	이 긍 규	14,298	14,340	28,638	
한국신당	김 용 환	25,139	9,986	35,125	당선
무 소 속	김 옥 선	1,719	1,697	3,416	
무 소 속	나 소 열	1,203	3,729	4,932	

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4월 15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위원 정수 299명 중 지역구의원 243명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에 의하고, 전국구의원 46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 21, 민주노동당, 가자희망 2080,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교, 노년 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 민주화합당, 사회당 등이었다.

총선거인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60.6%)이 참가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57.2% 투표율보다는 약간 상승한 의미 있는 투표이기도 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 돈이 적게 드는 정치제도 정비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정치회오리의 중심에서 실시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기존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방식인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선거방송토론회 개최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간접 접촉방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또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양방향 처벌을 시도하였다.

선거결과 중 눈에 띄는 현상은 그동안 급진세력으로 분류되었던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제2야당으로 등장함으로써 정당체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 보령시·서천군 후보자별 득표현황표

정 당	후 보 자	보령 득표수	서천 득표수	득표수 합계	비 고
한나라당	김 태 흠	2,630	2,441	5,071	
민 주 당	박 익 규	2,443	1,062	3,505	
우 리 당	김 명 수	13,015	10,245	23,260	
자 민 련	류 근 찬	20,769	9,800	30,569	당선
무 소 속	신 준 희	7,933	730	8,663	
무 소 속	이 긍 규	939	5,659	6,598	

다. 비례대표 득표현황표

정 당 별	전국득표수	충남 득표수	보령시 득표수
한 나 라 당	7,613,660	164,667	7,885
새 천 년 민 주 당	1,510,178	21,836	1,461
열 린 우 리 당	8,145,824	295,169	16,853
자 민 련	400,462	184,699	14,618
국 민 통 합 2 1	119,746	4,086	254
가 자 희 망 2080	31,501	2,941	684
공 화 당	24,360	2,015	198
구 국 총 연 합	9,330	585	38
기 독 당	228,837	9,044	540
노년권익보호당	37,084	1,487	129
녹 색 사 민 당	103,845	3,898	233
민 주 노 동 당	2,774,061	81,100	4,144
민 주 화 합 당	39,785	1,944	152
사 회 당	47,311	2,593	154
계	21,585,984	776,064	47,343

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 4월 9일 시행)

가. 정당과 정치상황의 개요

위원 정수 299명 중 지역구의원 245명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구별 최다수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에 의하고, 전국구의원 44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여당인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실향안보당, 기독교당, 문화예술당, 시민당, 신미래당, 직능연합당,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한국사회당 등이었다. 총선거인수 37,796,035명 중 17,415,666명(46.1%)이 투표에 참가하여 17대의 60.6%보다 투표율이 14.5%나 줄어들어,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제17대 대통령선거 연장선에서 실시된 이 선거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공천과정에서 격화된 계파간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여 '친박연대'와 무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하였고, 자유선진당 또한 충청권에서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대선에서 참패한 통합민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세력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와 함께 당내 공천개혁을 통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 하였으나 이미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으로 나뉘어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보령·서천에서는 자유선진당 바람을 기대하며 재선에 도전한 류근찬 후보와 한나라당 김태흠 후보가 유력후보로 접쳐지는 가운데, 통합민주당 조이환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민승기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153석을 확보하여 원내 1당이 된 반면, 민주당은 81석을 얻어 민심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였고, 17대 대선에 이어 충청권 바람 물이에 성공한 자유선진당은 18석을 확보하였다.

나. 보령시·서천군 후보자별 득표현황표

정 당	후 보 자	보령 득표수	서천 득표수	득표수 합계	비 고
통 합 민 주 당	조 이 환	2,640	6,135	8,775	
한 나 라 당	김 태 흠	15,412	7,367	22,779	
자 유 선 진 당	류 근 찬	24,195	11,757	35,952	당선
평 화 통 일 가 정 당	민 승 기	994	441	1,435	

다. 비례대표 득표현황표

정 당 별	전국 득표수	충남 득표수	보령시 득표수
통 합 민 주 당	4,313,645	98,045	4,016
한 나 라 당	6,421,727	196,418	11,898
자 유 선 진 당	1,173,463	273,564	18,980
민 주 노 동 당	973,445	34,052	1,757
창 조 한 국 당	651,993	18,392	823
친 박 연 대	2,258,750	52,283	2,436
국 민 실 향 안 보 당	93,554	1,489	82
기 독 당	443,775	19,715	882
문 화 예 술 당	33,966	2,903	46
시 민 당	17,656	1,274	70
신 미 래 당	12,122	878	59
직 능 연 합 당	16,622	907	51
진 보 신 당	504,466	12,411	554
평 화 통 일 가 정 당	180,857	9,712	611
한 국 사 회 당	35,496	2,018	122
계	17,131,537	724,061	42,387

5) 지방자치 선거와 보령시

(1) 지방자치 선거 의의와 개요

지방자치 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복잡한 현대국가에서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 자기 지배 원리의 실천이다.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1950년 최초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한국전쟁(6·25전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같은 해 5월 10일에 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초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7,536,630명 중 6,836,734명이 참가해 90.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도의회 의원은 유권자 6,358,383명 가운데 5,165,226명이 참가해 81% 투표율을 보였고, 7개 도에서 306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당시 완전히 수복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의 4개 군은 치안문제로 투표에서 제외되었다.

제2대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같은 해 8월 13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25개 시에서 416명의 시의원, 75개 읍에서 990명의 읍의원, 1,358개 면에서 15,548명의 면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투표율은 78.95%였다. 도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총 437개 선거구에서 437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투표율은 85.8%였다.

제3대 지방선거는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가운데, 1960년 8월 12일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에서 처음 실시한 지방선거였다. 1960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같은 해 12월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25개 시에서 420명의 시의원, 80개 읍에서 1,055명의 읍의원, 1,343개 면에서 15,376명의 면의원이 각각 선출되었고, 투표율은 78.95%였다. 이어서 실시된 1960년 12월 26일에 읍·면장 선거와 같은 해 12월 29일 실시된 시·도지사 선거는 38.8%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1961년 5. 16.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일단 중단되었다가 1988년 시·도지사과 구·시·군을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같은 해 6월 20일에 시·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다. 하지만 전면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라 할 수 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는 시·도교육감선거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2) 역대 지방자치 선거결과와 보령시 현황

①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이전

가. 초대 지방선거(1952년 4월 25일, 1952년 5월 10일 시행)

가) 도의원 : 이상락(무소속), 복연봉(자유당), 박종연(대한청년단)

나) 의회 간접선거에 의한 읍·면장 당선자 : 대천읍 이용우, 주포면 강응희, 오천면 조용숙, 천북면 이낙영, 청소면 이상우, 청라면 이원근, 남포면 김영환, 웅천면 백남봉, 주산면 임희재, 미산면 윤정섭.

다) 대천읍의회 의원 및 의장 당선자 : 심공섭(의장), 이복규, 윤원석, 손희철, 신중식, 신동무, 김재규, 오세영, 이상두, 정항섭, 이종철, 전용목.

라) 면의회 의장 : 주포면 최기호, 오천면 강상근, 천북면 조남현, 청소면 이준형, 청라면 이준균, 남포면 이종택, 웅천면 백남봉, 주산면 임을순, 미산면 김석규.

나. 2대 지방선거(1956년 8월 8일, 1956년 8월 13일 시행)

가) 도의원(1956년 8월 13일 실시) : 황명현(자유당), 이영우(민주당)

나) 주민 직접선거에 의한 읍·면장 당선자(1956년 8월 8일 실시) : 대천읍 이용우, 주포면 유찬호, 오천면 조용숙, 천북면 이낙영, 청소면 이상우, 청라면 이원근, 남포면 최장규, 웅천면 김현박, 주산면 임을순, 미산면 이상기.

다) 대천읍의회 의원 및 의장 당선자(1956년 8월 8일 실시) : 심공섭(의장), 이상두, 장준석, 손희철, 조동호, 황의성, 박창래, 강성규(사망), 최봉주(보선), 이은복, 오세영, 이병하, 전만수.

라) 면의회 의장 : 주포면 강응희, 오천면 김현덕, 천북면 최영환, 청소면 박영문, 청라면 김성희, 남포면 장계환, 웅천면 백창균, 주산면 임희재, 미산면 이종건.

다. 3대 지방선거(1960년 12년 12일, 1960년 12월 19일, 1960년 12월 26일 시행)

가) 도의원(1960년 12월 12일 실시) : 김현박(민주당), 이영우(민주당)

나) 주민 직접선거에 의한 읍·면장 당선자(1960년 12월 26일 실시) : 대천읍 이용훈, 주포면 조유환, 오천면 정기린, 천북면 조재신, 청소면 김상중, 청라면 이영구, 남포면 최장규, 웅천읍 김석기, 주산면 이종진, 미산면 임대순

다) 대천읍의회 의원 및 의장 당선자(1960년 12월 19일 실시) : 장준석(의장), 최봉주, 박창래, 김주련, 김동우, 황의성, 조중행, 신동윤, 박용무, 이상춘, 전월수, 김동기, 전만수.

라) 면의회 의장 : 주포면 이진구, 오천면 최종철, 천북면 강용재, 청소면 신규호, 청라면 이연범, 남포면 박성직, 웅천면 김신제, 주산면 박성열, 미산면 박종만.

라. 시·군의원(대천시, 보령군)선거(1991년 3월 26일 시행)

가) 대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 원동 박병찬, 복기을, 대관동 이수직, 대신동 김성복, 흥덕동 오배근, 왕대동 천옥석, 현포동 전만수

나) 보령군의회 의원 당선자 : 웅천면 백일기, 청소면 김재태, 천북면 김용태, 주포면 이준우, 주교면 김완복, 오천면 양석우, 청라면 이기웅, 남포면 조현국, 주산면 김홍재, 미산면 김지섭, 성주면 최병걸

마. 도의원(충청남도) 선거(1991년 6월 20일 시행)

가) 충남도의회의원 대천시 당선자

0. 제1선거구(원동, 대관동) : 박종무

0. 제2선거구(대신동,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 : 이시우

나) 충남도의회의원 보령군 당선자

0. 제1선거구(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 강신국

0. 제2선거구(청라면, 남포면, 성주면) : 오찬규

0. 제3선거구(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 이대회

②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 선거(1995년 6월 27일 시행)

가) 개요

1995년 6월 27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4가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광역시와 도 단체장 15명, 구·시·군 단체장 230명, 광역시와 도의회의원은 지역구 875명, 비례대표 97명으로 총 972명, 구·시·군의원은 4,304명이 각각 정수였다.

선출은 주민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광역시와 도의회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간접 선출 방식이었다. 광역시와 도의 단체장, 광역시의회와 도의회, 구·시·군의 단체장 선거는 정당공천이 허용되었고, 구·시·군의회의원은 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다. 집권당인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및 자유민주연합 등 3개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인사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하였다.

총선거인수 31,048,566명 중 21,217,417명(63.9%)이 투표에 참가하여 1991년 실시된

792 • 선거

지방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선거결과 두드러진 특징은 정당 선호 경향과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여전했다.

나) 충남도지사 선거결과와 보령시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충남 득표수	보령시 득표수
민 자 당	박 중 배	174,117	11,122
민 주 당	조 중 연	117,300	8,743
자민련(당선자)	심 대 평	616,006	41,291

다)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가) 보령시 제1선거구(원동, 대관동)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민 자 당	이 원 길	2,060
자민련(당선자)	김 봉 남	5,814
무 소 속	임 성 희	3,605

(나) 보령시 제2선거구(대신동,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

민주당 이시우 후보자 무투표 당선

(다) 보령시 제3선거구(주포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주교면)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민 자 당	이 신 복	2,645
자민련(당선자)	이 준 우	6,627
무 소 속	강 원 준	1,807
무 소 속	김 용 준	1,925
무 소 속	차 경 철	1,865

(라) 보령시 제4선거구(청라면, 남포면, 성주면)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민 자 당	신 재 원	4,506
자민련(당선자)	명 영 식	5,166

(마) 보령시 제5선거구(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민 자 당	김 정 원	3,201
자민련(당선자)	임 창 호	5,476
무 소 속	신 철 호	1,761

라) 보령시장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민 자 당	신 준 희	16,259
자민련(당선자)	김 학 현	35,971
무 소 속	김 동 준	6,469
무 소 속	이 대 원	2,297

마) 보령시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후보별 득표현황

선거구	당선자(득표수)	기타 후보(득표수)
웅천읍	김장환(2,431)	백일기(2,330), 황대식(850)
주포면	한호석(583)	권오덕(425), 최경락(342), 서용원(130)
오천면	김종현(1,274)	양석우(1,067), 윤승민(852), 김용학(572)
천북면	최익열(1,982)	김용태(1,237)
청소면	정행철(1,186)	정영조(794), 김철형(455), 김영명(387)
청라면	강신화(1,291)	이기응(1,244), 박수만(1,209)
남포면	조현국(2,144)	최진류(1,760)
주산면	임홍재(1,383)	신정섭(1,181)
미산면	이규우(942)	이완식(554), 김지섭(451), 이종창(368)
성주면	최병걸(1,249)	황경복(888)
주교면	강성석(1,563)	김완복(1,453), 박영태(726)
원 동	박병찬(2,265)	한상건(1,464), 노재성(1,088), 조성대(1,016), 복기을(1,010), 최관수(484)
대관동	김주성(2,813)	홍을주(1,347)
대신동	김충수(2,068)	성태용(1,744), 조경형(834)
흥덕동	오배근(3,060)	신동욱(1,283)
왕대동	천옥석(1,017)	유봉석(816)
현포동	장병열(928)	황을성(905), 황종수(598), 강중환(505)

나. 제2회 전국동시지방 선거(1998년 6월 4일 시행)

가) 개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광역시와 도의 단체장 16명, 구·시·군 단체장 232명, 광역시와 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616명, 비례대표 74명으로 총 690명, 구·시·군의회 의원 3,467명이 각각 정수였다. 선출은 종전과 같이 주민 직접 선거에 의하여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광역시와 도의원 중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간접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선거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된 선거로 집권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간의 경쟁이었다. 단체장 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상호견제와 지원 속에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인 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았다. 총선거인수 32,537,815명 중 17,155,577명 (52.7%)이 참여 제1회 투표율(63.9%)보다 11.2%감소되었다.

나) 충남도지사 선거결과와 보령시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충남 득표수	보령시 득표수
한 나 라 당	한 청 수	119,216	6,944
자민련(당선자)	심 대 평	656,795	46,301

다)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가) 보령시 제1선거구(주포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주교면, 원동, 대관동, 청라면)
자민련 이준우 후보자 무투표 당선

(나) 보령시 제2선거구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신동, 흥덕동, 왕대동, 현포동)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자민련(당선자)	신 재 원	20,887
무 소 속	김 정 원	6,619

라) 보령시장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자 민 련	김 봉 남	20,976
무 소속 (당 선 자)	신 준 희	22,261
무 소 속	이 대 희	10,201

마) 보령시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후보별 득표현황

선거구	당선자(득표수)	기타 후보(득표수)
웅천읍	김장환(2,649)	황대식(2,127)
주포면	권오덕(659)	한호석(646)
오천면	김중현	무투표당선
천북면	김경제(1,540)	이영호(1,539)
청소면	김철형(1,303)	오병호(997)
청라면	박수만(1,795)	한상래(635), 안병권(589)
남포면	황치만(1,438)	이해은(1,213), 김재진(1,184)
주산면	황규원(1,411)	임명재(1,053)
미산면	임세빈(906)	이규우(775)
성주면	황경복(1,039)	최병걸(957)

주교면	강성석	무투표당선
원 동	임대식(3,473)	박병찬(2,955)
대관동	김주성(1,760)	박영진(1,732)
대신동	성태용(2,362)	김충수(2,151)
흥덕동	오배근	무투표당선
왕대,현포동	박흥수(1,426)	천옥석(1,412), 유봉석(886), 최종인(347)

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 시행)

가) 개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광역시와 도의 단체장 16명, 구·시·군 단체장 232명, 광역시와 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609명, 비례대표 73명으로 총 682명, 구·시·군의회 의원은 3,485명이 각각 정수였다. 선출은 종전과 같이 주민 직접선거에 의하여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광역시와 도의원 중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간접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선거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런 시기적 상황 때문에 지역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 의미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선거의 예비전 성격을 띠었다. 중앙정치권의 관심이 증대되는 등 종전 지방선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환경에서 실시되었다. 광역시와 도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명 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1인 2표제를 시행하였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종전의 인쇄물, 신문과 방송을 이용한 연설과 광고, 연설회 등 전통적인 선거방법과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선거운동이 정당후보자 및 네티즌들에 의하여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우려도 낳게 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총선거인수 34,744,232명 중 16,946,236명(48.8%)이 참가하여 1998년 실시된 제2회의 투표율(52.7%)보다 3.9% 감소되었다.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발전을 위하여 공식 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상향식 공천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 투표율이 50% 이하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대표성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결과였다.

나) 충남도지사 선거결과와 보령시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충남 득표수	보령시 득표수
한 나 라 당	박 태 권	251,005	14,094
자민련(당선자)	심 대 평	508,796	39,141

다)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가) 보령시 제1선거구(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면, 대천1·대천2동)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한 나 라 당	신 재 원	10,938
자민련(당선자)	이 준 우	15,097

(나) 보령시 제2선거구(웅천읍, 남포 주산·미산·성주면, 대천3·대천4·대천5동)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한 나 라 당	명 영 식	9,573
자민련(당선자)	오 찬 규	16,777

라) 보령시장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한 나 라 당	신 준 희	19,725
자민련(당선자)	이 시 우	24,662
무 소 속	이 병 준	5,932
무 소 속	채 규 병	3,265

마) 보령시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후보별 득표현황

선거구	당선자(득표수)	기타 후보(득표수)
웅 천 읍	황대식(1,623)	김정원(1,145), 박동식(1,012), 최영철(967)
주 포 면	김규태(396)	김종학(285), 류근평(224), 김중돈(222), 문희남(190)
오 천 면	편삼범(2,119)	김종현(1,340)
주 교 면	강수석(1,154)	이상복(930), 장주복(643), 신광수(455)
천 북 면	이영호(1,466)	최철수(780), 신병희(579), 김용제(337)
청 라 면	박수만(1,318)	전영수(881), 윤남순(871)
청 소 면	김철형(1,028)	김재욱(905), 편도진(343)
남 포 면	박영희(1,930)	황치만(1,616)
주 산 면	황규원(1,308)	이기원(641)
미 산 면	임세빈(872)	이완식(779)
성 주 면	박상규(1,251)	황경복(658)

대 천 1 동	임대식(3,102)	박상신(3,040)
대 천 2 동	박영진(2,064)	김주성(1,083), 한양희(515), 양창용(135)
대 천 3 동	김충수(2,487)	성태용(1,870)
대 천 4 동	오배근(2,532)	정래인(2,398)
대 천 5 동	천옥석(2,153)	박흥수(1,234), 김향자(404)

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06년 5월 31일 시행)

가) 개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광역시와 도 단체장 16명, 구·시·군 단체장 230명, 광역시와 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655명, 비례대표 78명으로 총 733명, 구·시·군의회 의원은 지역구 2,513명, 비례대표 375으로 총 2,888명이 각각 정수였다.

이때부터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지역구 기초의원 선출방식이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신설되어, 광역시와 도 비례대표의원처럼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른 간접 선출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무급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유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의원 정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선거권연령은 19세로 낮아졌다.

총선거인수 37,064,282명 중 19,000,091명(51.3%)이 참가하여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48.8%)보다 2.5% 증가되었다.

특히 선거운동과 투표형태에서 나타나는 지연·학연·혈연·금연 등에 의한 부조리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지원 아래 시민단체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선정하여 사업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신중히 평가하여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당선자가 임기동안 공약을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나) 충남도지사 선거결과와 보령시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충남 득표수	보령시 득표수
열 린 우 리 당	오 영 교	178,169	16,826
한나라당(당선자)	이 완 구	379,420	20,818
민 주 노 동 당	이 용 길	52,41	2,392
국 민 중 심 당	이 명 수	209,254	11,282

다)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가) 보령시 제1선거구(주포·주교·오천·천북·청소·청라면, 대천1·대천2동)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한 나 라 당	김 한 태	11,389
국민중심당(당선자)	김 동 일	11,484
무 소 속	양 창 용	1,666

(나) 보령시 제2선거구(웅천읍, 남포·주산·미산·성주면, 대천3·대천4동·대천5동)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열 린 우 리 당	명 성 철	4,537
한 나라 당 (당 선 자)	백 낙 구	10,455
국 민 중 심 당	오 찬 규	8,722
무 소 속	김 지 덕	2,748

(다) 충남도(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현황

한 나 라 당	336,622	20,422
민 주 노 동 당	70,469	3,822
국 민 중 심 당	241,863	16,266

*☞ 국민중심당(추천순위 1번) 박정희(보령시 대천동 거주) 당선

라. 보령시장 선거결과와 득표현황

정 당	후 보 자	득 표 수
열 린 우 리 당	이 병 준	12,405
한 나라 당 (당 선 자)	신 준 희	24,390
국 민 중 심 당	이 준 우	14,462

마) 보령시의회 의원 선거결과와 후보별 득표현황

선거구	지 역	당선자(득표수)	기 타 후 보 자 (득표수)
가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국민중심: 김경제(1,743) 한나라: 편삼범(1,646) 국민중심: 이창성(1,285)	열린우리: 강성석(930) 한나라: 강명희(827) 한나라: 이용열(785) 민주노동: 김종돈(490) 국민중심: 신정철(634) 무소속: 강수석(635) 무소속: 김규태(930) 무소속: 김영석(529) 무소속: 김종현(614) 무소속: 김철형(696) 무소속: 박수만(848) 무소속: 박진화(896) 무소속: 이상복(626) 무소속: 최종인(252)

나	대전1동 대전2동	국민중심: 박영진(2,401) 한나라 : 임대식(2,159)	열린우리: 김종한(1,634) 한나라:강영근(1,952) 국민중심: 박상신(1,496) 무소속:김준래(358)
다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국민중심: 김정원(1,668) 한나라 : 임세빈(1,651) 국민중심: 윤문희(1,626)	열린우리: 김유제(688) 열린우리: 임영재(629) 열리우리: 장종대(167) 한나라: 박상배(1,492) 한나라:황치만(1,469) 국민중심: 박영희(1,072) 무소속: 박상규(1,152) 무소속: 이기원(275)
라	대전3동 대전4동 대전5동	한나라 : 김충수(2,318) 열린우리: 김중학(2,207)	한나라:홍민석(1,276) 국민중심: 성태용(1,263) 국민중심:천옥석(1,576) 무소속: 김중욱(623) 무소속: 박종만(1,064) 무소속: 유봉석(1,495) 무소속: 이조열(1,302) 무소속: 정종래(1,042)

바) 보령시 비례대표 시의원

득표수 및 당선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민중심당
득표수 및 득표율	11,396(22.55)	21,647(42.89)	17,454(34.54)
당 선 자		김 향 희	성 낙 규

(3) 충청남도교육감 주민직접선거(2008년 6월 25일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선출되던 교육감이 주민직선으로 변경되어, 2008년 6월 25일 충청남도 교육감선거가 실시되었다. 오제직 후보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충청남도 총선거인수 1,546,694명 중 265,583명이 투표(17.1%)하고, 투표자 중 255,392명이 찬성(96.1%)하여 당선되었다. 보령시는 선거인수 84,855명 중 19,591명이 투표(23.1%)하고, 투표자 중 18,777명이 찬성(95.8%)하였다.

3. 선거와 보령시

1) 선거관리와 보령시

(1)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연혁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963년 1월 16일 법률 제1255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2월 7일 충청남도에 11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령군과 서천군을 관할하는 제6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설치되었다.

1970년 12월 22일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서천군과 분리되어 보령군만 관할하였고, 1973년 1월 20일 보령군, 부여군, 서천군이 충청남도 제5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 독립되었다.

1981년 2월 28일 제6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86년 1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령군 대천읍’이 ‘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었다.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의하여 보령군과 대천시가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① 일반사항 및 현황

가. 위치 : 1963년 2월 7일 보령군청(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170-1) 내에 보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1986년 11월 1일 대천문화원(대천시 동대동 983-16)에 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분리 설치되었다. 현재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보령시 대천동 618-155 청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신축한 독립 건물로 1989년 12월 28일 이전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현황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구역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2008년 7월 31일 기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위촉년월일	경력 및 현직	추 천 별
위원장	김 한 수	2008. 5. 2.(연임)	보령시법원 판사	일 반
부위원장	이 병 철	2003. 9. 22.	전)보령시 총무국장	일 반
위원	이 선 행	2006. 3. 3.	법무사	일 반
위원	권 혁 영	2007. 1. 1.	(주)보창 대표이사	일 반
위원	오 난 희	2007. 1. 1.	대동공업(주) 보령점 대표	일 반
위원	문 희 원	2008. 2. 12.	전)보령시 산업건설국장	일 반
위원	김 진 의	2007.8. 23.(연임)	전)국회의원 보좌관, 교사	한나라당
위원	송 재 표	2004. 3. 15.	위원	통합민주당

다. 조직 및 업무현황

구분	주요업무	비고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1명
관리계	선거절차사무, 당내경선 일반사무, 권역별 연구분임운영사무, 기획·인사사무, 예산·회계사무, 위원회운영, 선거관련 용품관리	계장 외 2명
지도계	공직선거 등 법규해석 및 운용, 공직선거 등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황, 정치자금 수입·지출 조사·확인 선거소청, 선거소송 사무	계장 외 1명
홍보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직선거, 국민투표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지원	계장 외 1명

라. 선거관리 환경

가) 인구 및 선거인수(2008년 1월 31일 기준)

인구수	세대수	선거인수 (19세 이상 주민수)			부재자수
		계	남	여	
107,536	43,071	85,400	42,704	42,696	2,759

나) 공직선거 선거구 현황

선거명	선거구 명칭	선거구역	정수	기타
국회의원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보령시, 서천군 일원	1	
시장	보령시 선거구	보령시 일원	1	
도의원	보령시 제1선거구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1	비례대표 2
	보령시 제2선거구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1	
시의원	보령시 가 선거구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3	
	보령시 나 선거구	대천1동, 대천2동	2	
	보령시 다 선거구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3	
	보령시 라 선거구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2	

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구 수

2005년 8월 4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1개 읍, 10개 면, 5개 동, 합계 16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구 수는, 옹천읍 3, 주포면 1, 주교면 2, 오천면 10, 천북면 2, 청소면 2, 청라면 3, 남포면 3, 주산면 2, 미산면 3, 성주면 2, 대천1동 4, 대천2동 3, 대천3동 3, 대천4동 4, 대천5동 3 등 총 50개이다.

②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관리 현황

가. 조합장 위탁선거

선거일자	대상조합 (선거인수)	당선자 및 후보자별 득표수
2005. 9. 16.	오천농협 (1,336)	당선자 문무정(598) , 조창주(410), 이동규(128)
2006. 1. 24.	주산농협 (1,182)	당선자 이당우(525) , 임승관(484)
2006. 1. 24.	옹천농협 (2,032)	당선자 김응기(1,150) , 백인호(544), 김완진(89)
2006. 2. 21.	천북농협 (1,505)	당선자 최익열(724) , 최인돈(444), 전춘식(165)
2006. 3. 16.	신흥수협 (615)	당선자 유병두(261) , 고영욱(219), 김도환(71)
2006. 6. 27.	산림조합 (4,072)	당선자 황규정(1,104) , 최영진(489)
2007.10. 23.	남포농협 (1,714)	당선자 최택순(917) , 한성진(320), 김준태(45)
2008. 6. 3.	청소농협 (1,364)	당선자 김형구(628) , 전익수(598)

나. 기타 위탁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선거, 당내 경선관리, 주민투표, 국립대학총장선거 등을 위탁 받아 실시할 수 있는데,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선거관련 당내 경선, 교육위원선거 등 위탁선거 관리를 했다.

(3)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구역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는 96명(16개× 6명)이다.

(4) 보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하여

① 일반 사항 및 현황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및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단위로 구성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한다)으로 구성한다.

보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관한 사무와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무 및 공직선거법 제81조와 제82조에 정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현황(2008년 7월 31일 현재)

직 위	성 명	위촉연월일	경력 및 현직	추천별
위원장	김 정 순	2007. 3. 23.(연임)	아주자동차대학 교수	학계
위 원	최 준 원	2007. 3. 23.(연임)	옥스퍼드학원장	선관위
위 원	이 선 행	2007. 3. 23.(연임)	법무사	선관위
위 원	이 호 은	2007. 3. 23.	청운대학교 교수	방송위원회
위 원	최 성 원	2005. 12. 27.	KBS 기자	KBS
위 원	서 영 석	2007. 3. 23.	대전MBC 홍성방송본부장	MBC
위 원	김 성 윤	2007. 3. 23.	충청투데이 편집국 부국장	한나라당
위 원	정 선 택	2008. 3. 7.	전)서천군정 모니터회장	통합민주당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활동 상황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보령시장선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대전방송국(TJB)에서 생방송으로 실시하였다.

2) 선거, 선거운동과 지역경제

해방 이후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60여 회 가까운 각종 선거가 실시되었다. 즉 1년에 1회 이상 실시되었다는 결론인데, 정치환경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에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왔다.

1960-1970년에는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었고, 연설회가 열리는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청중을 동원하여 기선을 제압하려는 후보 간 경쟁도 대단했었다.

이 시절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제공하는 막걸리로 목을 축일 수 있었고, 후보들이 제공하는 고무신·수건·밀가루 같은 생필품 등을 받기도 했는데, 이후 상당기간 선거과정에서 금전과 향응제공 및 관권동원 방식에 의한 불법선거의 틀을 벗지 못했었다.

후보자와 정당이 공식·비공식으로 쏟아내던 막대한 자금은 일시적이거나 선거철 지역경제를 흥청거리게 했었다.

국민과 정치권이 노력한 결과로 선거법과 제도가 상당 부분 정비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정착과 함께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되었다. 다양한 감시기구와 장치, 금전수수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액의 과태료 부과, 선거 전 일정기간 모임과 행사 제한 등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불법선거운동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제 지역경제에 일시적 호황을 안겨 주던 선거철 특수라는 말이 오래전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런 현상은 보령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